

# 휴먼케어 지능형 문화예술콘텐츠의 디자인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 운영관리규정

2020. 09. 01. 제정  
2021. 01. 28. 일부개정  
2021. 08. 02. 일부개정  
2021. 09. 08. 일부개정  
2021. 11. 16. 일부개정  
2023. 02. 08. 일부개정  
2023. 08. 11. 일부개정  
2024. 10. 18. 일부개정  
2025. 10. 14. 일부개정

## I. 총 칙

###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4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의 위임을 받아 4단계 BK21사업 지원을 받는 전남대학교 아트&디자인테크놀로지 협동과정 「휴먼케어 지능형 문화예술콘텐츠의 디자인융합인재양성 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수행 과정 및 처리절차 등 제반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본 규정은 4단계 BK21사업의 혁신인재 양성사업의 산업·사회문제 해결분야에 선정된 교육연구단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교육부의 법령 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II. 조직 및 운영

### 제3조 조직구성

1. 교육연구단에는 교육연구단장,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BK교수, 박사후 과정생), 산학협력 전담인력으로 구성되며, 사업의 의사결정을 위한 운영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2. 교육연구단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산업·사회문제해결, 국제화의 5개 분과 위원회를 두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별도의 연구조직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다.
3. 각 분과에서는 분과장을 두며, 각 분과장은 교육연구단장이 위촉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다.
4. 각 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 ① 교육: 교과과정 개발 및 기획, 우수 대학원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대학원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융복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② 연구: 교육연구단 제반 연구 업무 지원하며, 연구 프로젝트에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 학술연구 진흥 종합계획 수립하고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의 추진 및 수행

- ③ 산학협력: 산학연 프로그램 기획개발 연구, 다양한 산학협력 전략수립,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의 코디네이션 지원
- ④ 산업·사회문제해결: 예술비즈니스 콘텐츠기술, 문화예술, 헬스, 안전 관련 지역사회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유가치창출의 아젠더 기획 및 프로그램 운영
- ⑤ 국제화: 국제협력, 국제 공동 연구 촉진 및 지원, 해외연수 및 국제학술대회 지원 등의 글로벌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제4조 교육연구단장

1. 교육연구단장은 전남대학교 전임교원으로 하며, 전남대학교 총장이 임명한다.
2. 교육연구단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 ① 사업의 총괄 수행
  - ②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 ③ 사업실적, 성과의 홍보 및 확산
3. 교육연구단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본 사업단에 대한 자체 평가 기준을 가지고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연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자체평가 대상 기간은 전년도 9월 1일에서 해당년도 8월 31일이다.
4. 교육연구단장을 교체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5조 참여교수

1. 교육연구단에 참여하는 교수의 자격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남대학교 소속 전임교원으로 한다.
2. 참여교수는 연구년, 장기해외출장 등의 경우에도 참여대학원생들을 지도함으로써 교육연구단 참여 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참여교수의 신규 참여, 교체 등의 조정 시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하고, 전문기관의 최종 승인을 받아 시행)에서 결정하며, 아래 [참여교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참여교수 자격요건]

- ① 전임교원이어야 함
  - ② 휴직 상태가 아니어야 함: 참여교수가 연구년 또는 장기 해외출장(6개월 이상) 등으로 국내에 없을 때에는 대학의 장이 해당 기간 동안 학생을 지도(논문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교수의 교육연구단 참여를 인정한다. 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교수는 교육연구단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제한자가 아니어야 함
4. 참여교수 신규참여의 경우 전체 참여교수의 2/3 이상의 동의를 통해 결정하며, [4단계 BK21사업 공고상의 참여교수 자격요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제6조 참여대학원생

1.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전일제 등록 대학원생으로 4대보험 미가입자이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① 입학한 지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석사과정생
  - ② 입학한 지 4년을 경과하지 않은 박사과정생
  - ③ 입학한 지 6년을 경과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2. 제1항 각 호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3. 참여대학원생에는 박사과정 수료 후 등록을 한 박사학위과정수료자도 포함한다.
  4. 사업기간동안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0월에 참여대학원생의 4대보험(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5. 참여대학원생은 신상 및 신분의 변동이 있을경우 지도교수와 교육연구단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해야 한다.

### 제7조 신진연구인력

1. 신진연구인력은 BK계약교수, 박사후 과정생으로 구성한다.
2. 신진연구인력은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교육연구단장이 임용한다.
3. 신진연구인력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전남대학교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4. 신진연구인력은 1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4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신진연구인력은 4단계 BK21사업에 전념해야 하며, 사업 수행과 관련된 교육, 연구, 연구과제 발굴 및 기획 등 사업 전반의 수행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 제8조 산학협력 전담인력

1.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교육연구단의 제반 행정 및 회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교육연구단장이 임용한다.
2. 산학협력 전담인력을 채용하려는 때에는 급여·퇴직금 등 근로 조건, 의무와 책임, 계약해지조건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3.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계약이 가능하며, 최대 4년까지 계약할 수 있다.
4. 산학협력 전담인력의 채용 및 근로조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전남대학교 규정을 준용한다.
5. 산학협력 전담인력은 4단계 BK21사업에 전념해야 하며,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산학협력, 연구과제 발굴 및 기획 등 사업 전반의 수행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 제9조 운영위원회

1. 교육연구단의 사업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이 위원장이며, 위원은 총 5분과의 분과장이 당연직으로 총 6인으로 구성한다.
3. 교육, 연구, 산학협력, 산업·사회문제해결, 국제화의 5개의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며, 각 분과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4.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 3인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
5.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7.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의 전체 참여교수 과반수 출석에 의한 교수회의로 대체하여 심의 및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8.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연구단 운영 전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 ①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한 규정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② 교육연구단 예산 및 결산
  - ③ 교수별 성과급 차등화 제도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대내외 교육연구단에 관한 제반 사항
  - ⑤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제10조 자체평가위원회

1. 교육연구단장은 제4조 3항의 자체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2. 자체평가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내부위원 2인, 외부위원 2인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한다.
3. 자체평가위원회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4. 자체평가위원회는 교육연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명시적인 자체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 Ⅲ.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제11조 참여대학원생 및 우수대학원생 지원 기준

1. 참여대학원생은 제6조에 의거하며 교육연구단과 관련된 교육연구 활동, 산업·사회문제해결 활동, 국제화 활동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범위 및 적합성은 교육연구단장이 결정하여 진행한다.
2. 참여대학원생 중 연구장학금을 받는 대학원생을 우수대학원생이라고 하며, 우수대학원생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2회 정기적으로 선발한다. 단, 비정기적으로 우수대학원생의 교체 등이 필요할 경우, 교육연구단장이 결정하여 진행한다.
 

\*[별표 1] 연구장학금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3. 우수대학원생의 연구장학금 및 기타연구활동 등의 지원범위와 적합성은 4단계 BK21사업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연구단장이 결정하여 진행한다.
4. 우수대학원생의 장학금은 4단계 BK21사업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5. 지원대학원생은 30일 초과하는 해외 출국 시 장학금 지급이 불가하며, 30일 미만 해외 체류 시 사전에 교육연구단에게 신고 한 후 교육연구단장이 결정하여 연구장학금을 지급한다.
6. 본 교육연구단은 연구활동분야에서 우수한 실적의 참여대학원생에게 일정 금액을 성과급으로 차등 지원한다.
 

\*[별표 2]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지급 기준
7. 교육연구단장은 참여대학원생의 연구 및 학술활동 등 성과를 인정하여 장학금, 성과급,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

- ② 학석사연계 과정 프로젝트 수행
- ③ 산업사회문제해결을 위한 탁월한 연구성과

**제12조 참여교수 학술활동 지원 및 성과급**

1. 교육연구단 관련된 참여교수의 학술활동 지원은 논문/작품 게재료, 국내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일회성 참가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및 적합성은 교육연구단장이 결정한다.
2.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는 당해연도 우수연구성과, 교육연구단 운영상 기여 등을 종합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3. 당해연도 성과물 인정기간 및 성과급 지원 금액, 지급시기는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교육연구단장이 최종 결정한다.
4. 참여교수 성과급에 대한 인원과 금액은 4단계 BK21규정을 준용하며, 별도 지표를 마련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별표 3]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참조)
  - ① 교육/연구활동(30%): 아트&디자인테크놀로지 협동과정 교육과정 개발 및 강의, 석·박사 배출, 논문/작품게재, 공모전 수상, 지식재산권, 특허, 기술이전 등
  - ② 산업·사회문제 해결(10%): 산업·사회문제해결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개최 및 운영(세미나, 특강, 워크숍 등)
  - ③ 국제화(20%): 해외우수인력 유치 및 환류 프로그램, 해외 연구 인프라 구축,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추진
  - ④ 교육연구단 기여도(40%): 사업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작성 지원, 교육연구단 운영관리 업무 지원, 자체평가 자문, 기타 관련 사업 성과 창출
5. 성과급 지급에 대한 최종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고득점 순으로 결정하여 책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 한다.(참여교수의 성과급은 1인당 연 48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제13조 자체평가위원회 자문료**

1. 외부위원의 자문료는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지침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2. 내부위원의 자문활동은 제12조 4항의 교육연구단 기여도에 적용하여 참여교수 성과급 평가에 반영한다.

**제14조 신진연구인력 지원비**

1. 신진연구인력 1인당 지원 기준은 4단계 BK21 규정을 준용한다.
2. 신진연구인력은 계약 기간 동안 실적이 우수한 경우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한다.
3. 신진연구인력에 대한 별도 지표를 마련하여 운영위원회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15조 국제학술대회 지출 기준**

1. 4단계 BK21사업의 기준에 부합하는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참여대학원생에게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 참여교수는 지도하고 있는 참여대학원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에만 한하여 지원가능하다.
  - ① 국제학술대회 지원은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해 [별표 4] 를 제출해야 하며, 부실 학회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원한다. ([별표 4]부실 학회 점검 체크리스트)
2. 경비지원 여부는 운영위원회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신청자가 예산에 비해 많을 경우, 논문제1저

자, 공동저자, 단순참가자로 우선순위를 두며, 국제학술대회의 규모와 인지도, 지원자들의 정량적 연구 성과를 심사하여 선별하여 지원한다.

3. 경비의 지원은 4단계 BK21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의 국제화경비 지급기준을 따른다.
4.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학술회의는 4단계 BK21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준용하고, 교육연구단장이 대학원생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국제(학술)대회 인정기준]

- 과학기술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2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인문사회 분야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국제전시회 :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출판작 10편 이상, 출판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 이상(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3분의 1 이상)
- 상기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도 영리목적의, 학문적 권위가 인정되기 어려운 부실학회·학술지가 개최하는 국제학술대회는 제외

5. 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학술회의 참가 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참여대학원생의 경우 발표별 논문 저자 중 3인 이내 또는 지정토론자(단, 권위있는 국제 전시회 출품은 국제학회 참가와 동일한 기준 적용)
  - ② 참여교수의 경우 제1호 학생과 동행하는 지도교수(학생이 발표논문의 저자로서 참여하는 경우 지원가능)

**제16조 장·단기 해외연수 대상 선발**

1. 장기연수는 15일 초과, 단기연수는 15일 이내로 한다.
2. 장기해외연수 대상 참여대학원생은 연구성과에 따라 선발하며, 항공료 포함하여 수업료, 숙박비, 식비, 교재비, 의료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단, 장기해외연수 시에는 동반 교수와 관련한 경비는 집행할 수 없다.
4. 장·단기 교육연수 지원자는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산학협력 전담인력이 신청 할 수 있으며, 신청 시 교육연수 지원서 및 계획서, 교육연구단장 추천서를 제출해야 한다.
5. 장·단기 교육연수 지원자 평가는 운영위원회 심사 및 교육연구단장 승인으로 최종 선발하며, 예산범위에 따라 총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위를 우선 지원한다.
6. 연수비를 지원 받은 자는 연수를 통해 이루어진 연구결과물에 본 교육연구단(전남대학교)에서 지원 받았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7. 기타 장·단기해외연수는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 지침,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제17조 해외학자 초빙에 대한 규정**

1. 교육연구단의 교육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교수의 추천에 따라 교육연구단장이 학자를 초빙할 수 있으며 교육연구단장은 교육연구단 연구분야와 공동연구 필요성, 활용 효과, 해당분야의

저명도를 평가하여 해외석학을 초청한다.

2. 해외학자를 초빙하고자 하는 참여교수는 해외학자 초빙 시 활용계획서를 사전에 본 교육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초빙 후에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초빙된 해외학자는 교육연구단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협력연구에 도움이 되는 공동연구수행, 자문 등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또한, 세미나/특강을 통하여 참여 대학원생의 국제적인 견문 습득과 연구역량을 높이도록 한다.
4. 지원 금액은 해외학자의 국내 실 입국 기간에만 지급 가능하며, 초빙 수당 이외에 항공비 실비와 체제비(실비 혹은 본교 여비 규정에 따름)를 지원한다. 단, 교육연구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대해 추가 지원할 수 있다.
5. 해외학자의 초빙은 본교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6. 기타 해외학자 초빙은 한국연구재단에서 공포한 4단계 BK21사업 관리운영 지침,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을 준용한다.

### 제18조 홈페이지 운영

교육연구단 홈페이지에 현황, 참여자, 진행 상황, 성과관리 및 홍보,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내역 등을 게재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단, 지적재산권 문제가 있는 연구실적에 대하여는 목록만 등재할 수 있다.

### 제19조 승인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연구단의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 교육연구단장 변경
- ② 참여교수 교체
- ③ 사업목표 등에 대한 협약 내용 변경 등

### 제20조 기타

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4단계 BK21사업의 관리운영지침을 준용한다.

[별표 1] 연구장학금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연번	평가항목	평가방법	평가비율(%)	비고
1	(최근 1년이내) 연구실적물	정량평가	20	[붙임 1]참고
2	연구계획서	정성평가	30	
3	(최근 1년이내) 교육연구단 및 협동과정 참여도	정량평가	20	1건당 10점
4	(최근 1년이내) 교육연구단 및 협동과정 기여도	정성평가	30	
합계			100	

[붙임 1] 참여대학원생의 연구실적 인정범위

구분	평가항목		점수	비고	
연구활동	논문 게재	3대 과학저널 (Nature, Science, Cell)	1000	· 인정비율 참고	
		국제규모학술지 S급(JCR 상위 10%)	400		
		국제규모학술지 A급 (SCI, SCIE, SSCI, A&HCI)	300		
		국제규모학술지 B급 (SCI, SCIE)	200		
		SCOPUS Article	150		
		KCI 등재지 (등재후보 포함)	150		
	학회 발표	국제	Proceedings	30	· 4개국 이상 구두발표, 외국인 발 표 50% 이상
국내		발표논문집	10		
창작 활동	공모전	국제 저명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콰드리엔날 레 및 디자인 어워드 수상	본상	450	· 미술상은 20개국 이상 참여 전시 에 한함 · 디자인상은 디자인어워드(레드닷, iF, IDEA), 광고제(칸국제광고제, 뉴욕페스티벌, 클리오광고제), 영 상영화제(칸, 베네치아, 베를린영 화제) 해당 · 본상은 우수상 이상이고, 입선은 최종 수상한 경우에 해당하며, nominee는 인정하지 않음
			입선	250	
		국외 미술·디자인상	150	· 국내/국외 구분은 수여기관의 국 가를 기준으로 함	
		국내 미술·디자인상	100		
	전시회	개인작품전	국외 개인작품전	200	· 신(新)작품 10점 이상 · 국내/국외 구분은 전시장소를 기 준으로 함
			국내 개인작품전	150	
		2인전 및 3인전	국내외 2인전	100	· 신(新)작품 6점 이상
			국내외 3인전	80	· 신(新)작품 4점 이상
		저명 미술, 디자인 대형 전람회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콰드리엔날 레 본 전시 참여	200	· 20개국 이상 참여
				150	· 10개국 이상 참여

			공예박람회, 아트페어, 디자인페어, 아트엑스포 전시	100		
			기획, 단체 작품전	기획전· 초대전		50
				단체전		50
산 학 협 력	디자인 실용화	국내외 공인된 인증마크 (GD마크, Pinup 마크 등)		100	· 실적 개수는 디자인프로젝트 단위 로 인정함	
	지식재 산권, 특허	해외특허(건당)		300	· 전남대학교 명의로 설정 및 권리 등록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국내특허(건당)		150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등록)(건당)		100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건당)		100		

※ 인정비율

구분		주저자	공저자	비고
학술논문 및 학술발표	국제	· 단독: 100% · 저자수 2인 이상 $[(1/N) + 0.5] \times 100\%$	$[(1/N)+0.1] \times 100\%$	· N은 총 저자수 N=15 이상일 경우 N=15 처리
	기타 국제 및 국내	· 단독: 100% · 저자수 2인 이상 $[(1/N) + 0.2] \times 100\%$	$(1/N) \times 100\%$	

- 주필자는 교신저자 및 제1저자로 하고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한다

[별표 2] 참여대학원생 성과급 지급 기준

지원대상 : BK21참여대학원생					※ BK21참여대학원생 중 장학금 미지원 대상자만 해당
구분		전국 규모 우수 학술지 (KCI, KCI후보)	국제 규모 학술지 (A&HCI, SSCI, SCI, SCIE, SCOPUS)	3대 과학 저널 (Nature, Science, Cell)	국제 학술대회 발표 (KCI급 이상 학술대회 발표)
① 입학 후 첫 번째 논문	석사	실비지급	1,000,000원	2,000,000원	300,000원
	박사				
	석·박사통합				
② 입학 후 두 번째 논문	석사	500,000원	1,500,000원	2,500,000원	
	박사	실비지급			
	석·박사통합				
③ 입학 후 세 번째 논문	석사	7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박사	700,000원			
	석·박사통합	실비지급			
④ 입학 후 네 번째 논문	석사	1,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박사	1,000,000원			
	석·박사통합	700,000원			
⑤ 입학 후 다섯 번째 이상 논문	석사	1,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	
	박사	1,000,000원			
	석·박사통합	1,000,000원			
실적 인정 조건	해당년도 3월 1일 ~ 익년도 2월 28일 기간 내 주저자(제1저자, 교신저자)로 논문 게재 또는 국제학술대회 발표를 한 참여대학원생				
비고	지원 횟수는 해당년도 1인당 5편으로 제한. (단, 논문 번역료, 학술대회 참가비 등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성과급 미지급)				

- 지급시기 : 해당년도 상반기 신청자는 8월 말 지급 / 하반기 신청자는 익년도 2월 말 지급함
- 성과급은 타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불가능
- 실비지급은 게재료만 해당되며, 최대 300,000원 지급 가능

[별표 3] 참여교수 성과급 지급 평가 기준

구분	평가 방법	평가항목	배점		비고	
1. 교육/연구활동 (30%)	정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트&amp;디자인테크놀로지 협동과정 교과목 강의</li> </ul>	1학기	2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 배점은 본교 교육업적평가 기준 준용</li> </ul>	
			2학기	200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트&amp;디자인테크놀로지 협동과정 교육과정 개발</li> </ul>	1건당 2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석·박사 배출*</li> </ul>	석사	1명당 50점		
			박사	1명당 100점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술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저명 학술지/등재(후보)지 게재</li> <li>- 학술 발표 등</li> </ul> </li> <li>창작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작품 전시 개최 및 참여</li> <li>- 국제 공모전 수상 등</li> </ul> </li> <li>산학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식재산권, 특허의 출원 및 등록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부 배점은 각 전공 계열별 연구업적평가 기준 준용</li> </ul>		[붙임 2], [붙임 3], [붙임 4], [붙임 5] 참조		
2. 산업·사회문제 해결 (10%)	정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산업·사회문제해결관련 비교과 프로그램 개최 및 운영(세미나, 특강, 워크숍 등)</li> </ul>	1건당 100점			
3. 국제화 (20%)	정량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외우수인력 유치 및 환류 프로그램</li> <li>해외 연구 인프라 구축</li> <li>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연구 추진</li> </ul>	1건당 100점			
4. 교육연구단 기여도 (40%)	정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 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작성 지원</li> </ul>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육연구단 운영관리 업무 지원</li> </ul>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체평가 자문</li> </ul>	10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타 관련 사업 성과 창출</li> </ul>	100점			

**※석·박사 배출\***

- 전남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지도교수로서 당해연도에 배출한 석사 또는 박사의 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학위논문 지도교수 변동 시 최종 지도교수에 한하여 인정함)
- 공동 학위지도교수의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공동지도 교수 수만큼 나누어 계산한 후 각기 부여한다.

**※ 참여교수의 지급액은 전체 성과급 예산에서 아래 표의 비율로 분배하여 지급한다.**

등급	S	A	B
인원 산출 비율(n)	참여교수의 10%이내	참여교수의 20%이내	참여교수의 70%이내
성과급 금액 산출 비율(i)	당해연도 성과급 예산의 13%	당해연도 성과급 예산의 22%	당해연도 성과급 예산의 65%

- 전체 1인당 성과급 금액 산출 방법  
 $\{\text{당해연도 성과급 예산} \times \text{해당 등급의 성과급 금액 비율}(i)\} \div \text{해당 등급의 인원 비율}(n)$
-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상위 점수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붙임 2] 미술·디자인 분야 연구업적평가

구분	연구실적명	점수		비고
		국외	국내	
1. 개인작품전	국외 개인작품전	250		*신(新)작품 10점 이상 *국내/국외 구분은 전시장소를 기준으로 함
	국내 개인작품전	200		
2. 2인전 및 3인전	국내외 2인전	150		*신(新)작품 6점 이상
	국내외 3인전	120		*신(新)작품 4점 이상
3. 저명 미술, 디자인 대형 전람회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쿼드리엔 날레 본 전시 참여	200		*20개국 이상 참여
		150		*10개국 이상 참여
	공예박람회, 아트페어, 디자인페어, 아트엑스포 전시	100		
4. 기획, 단체 작품전	기획전·초대전	100	70	*국제는 3개국 이상 참여
	단체전	70	50	
5. 실용화한 디자인	국내외 공인된 인증마크 (GD마크, Pinup 마크 등)	150		
	국내외 실용화된 디자인 기획 및 설계	100		*실적 개수는 디자인프로젝트 단위로 인정함
6. 저명 미술· 디자인상	국제 저명 비엔날레, 트리엔날레, 쿼드리엔날레 및 디자인 어워드 수상	본상	450	*미술상은 20개국 이상 참여 전시에 한함 *디자인상은 디자인어워드(레드 닷, iF, IDEA), 광고제(칸국제광 고제, 뉴욕페스티발, 클리오광 고제), 영상영화제(칸, 베네치아, 베를 린영화제) 해당 *본상은 우수상 이상이고, 입선 은 최종 수상한 경우에 해당하 며, nominee는 인정하지 않음
		입선	250	
	국외 미술·디자인상	150		*국내/국외 구분은 수여기관의 국가를 기준으로 함
	국내 미술·디자인상	100		
7. 공인된 기관의 전시 기획 또는 평론	전시 기획	200	100	*평론은 200자 원고지 10매 이 상
	미술 평론	100	70	
	개인전 평론	50		

[붙임 3] 인문·사회계열 분야 연구업적평가

구분	평가항목		점수
1. 학술논문	3대 과학저널 (Nature, Science, Cell)		1000
	국제규모학술지 S급(JCR 상위 10%)		400
	국제규모학술지 A급(SSCI, A&HCI)		300
	국제규모학술지 B급(SCI, SCIE)		200
	SCOPUS Article		150
	전국규모 우수 학술지		150
	기타 국제규모 학술지		150
	기타 전국규모 학술지		70
	교내 및 기타 학술지		50
2. 학술서적	국제학술저·역서		450
	국내학술저·역서		300
	기타학술저·역서		150
	초·중등 교과서		100
	편저, 개정판, 실습용 교재, 사전류		50
3. 학술발표	국제	Proceedings	30
	국내	발표논문집	10
4. 외부 연구비 신청	외부 연구비 신청(건당)		5
5. 외부 연구비 수혜	연간 외부연구비 총액	5천만원 이상	80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	60
		5백만원 ~ 2천만원 미만	40
		2백만원 ~ 5백만원 미만	10
6. 학술상	학술원 및 예술원 수상		100
	국제학회 수상		80
	국내학회 수상		50

※ 인문·사회계열 인정비율

구분	주저자	공저자	비고	
학술논문 및 학술발표	국제	• 단독: 100% • 저자수 2인 이상 $[(1/N) + 0.5] \times 100\%$	$[(1/N)+0.1] \times 100\%$	• N은 총 저자수 N=15 이상일 경우 N=15 처리
	기타국제 및 국내	• 단독: 100% • 저자수 2인 이상 $[(1/N) + 0.2] \times 100\%$	$(1/N) \times 100\%$	
학술서적	• 단독: 100% • 저자수 2인 이상 $(1/N) \times 100\%$			

※ 주필자는 교신저자 및 제1저자로 하고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한다.

- 학위논문은 해당 직급 재직기간에 발표된 경우에 한하여 박사학위 논문은 200점, 석사 학위 논문은 100점을 인정한다.

[붙임 4] 자연계열 분야 연구업적평가

구분	평가항목		점수
1. 학술논문	3대 과학저널 (Nature, Science, Cell)		1000
	국제규모학술지 S급(JCR 상위 10%)		400
	국제규모학술지 A급 (SCI, SCIE, SSCI, A&HCI)		200
	SCOPUS Article		100
	전국규모 우수 학술지		100
	기타 국제규모 학술지		100
	기타 전국규모 학술지		60
	교내 및 기타 학술지		50
2. 학술서적	국제학술저·역서		400
	국내학술저·역서		200
	기타학술저·역서		100
	초·중등 교과서		100
	편저, 개정판, 실습용 교재, 사전류		50
3. 학술발표	국제	Proceedings	30
	국내	발표논문집	10
4. 외부 연구비 신청	외부 연구비 신청(건당)		5
5. 외부 연구비 수혜	연간 외부연구비 총액	1억원 이상	80
		5천만원 ~ 1억원 미만	60
		1천만원 ~ 5천만원 미만	40
		5백만원 ~ 1천만원 미만	10
6. 학술상	학술원 및 예술원 수상		100
	국제학회 수상		80
	국내학회 수상		50

※ 자연계열 인정비율

구분		주저자	공저자	비고
학술논문 및 학술발표	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 100%</li> <li>• 저자수 2인 이상  <math>[(1/N) + 0.5] \times 100\%</math> </li> </ul>	$[(1/N)+0.2] \times 1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N은 총저자수 N=15이상일 경우 N=15 처리</li> </ul>
	기타국제 및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 100%</li> <li>• 저자수 2인 이상  <math>[(1/N) + 0.3] \times 100\%</math> </li> </ul>	$[(1/N)+ 0.1] \times 100\%$	
학술서적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독: 100%</li> <li>• 저자수 2인 이상  <math>(1/N) \times 100\%</math> </li> </ul>		
학술서적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학술 역서</li> </ul>		

	단독: 25% • 저자수 2인 이상 $(1/N) \times 25\%$ • 국내학술 역서 단독: 50% 저자수 2인 이상 $(1/N) \times 50\%$	
--	---	--

※ 주필자는 교신저자 및 제1저자로 하고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인정한다.

- 학위논문은 해당 직급 재직기간에 발표된 경우에 한하여 박사학위 논문은 200점, 석사 학위 논문은 100점을 인정한다.

※ 전 계열 연구실적물 인정기준 공통사항

1. 학술논문: 형식과 내용이 논문체계(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등)를 갖춘 전공분야에 관한 것으로 권, 호, 페이지가 부여되어 출판 완료된 논문만을 인정한다.

가. 국제규모 우수 학술지: 국제규모 학술지중 SCI, SCIE, SSCI, A&HCI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나. 기타 국제규모 학술지: 대한민국을 제외한 G20국가에서 외국어로 발행하고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다. 전국규모 우수 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라. 기타 전국규모 학술지: 3)항의 한국연구재단 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에서 제외된 학술지로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심사위원의 논문심사과정을 거쳐서 발간되는 전국규모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

마. 교내 및 기타 학술지: 가, 나, 다, 라항에 포함되지 않는 학술지, 연구소 발행 논문집 및 국내 저명 정기 간행물에 실린 논문.

## 2. 학술서적

국제 및 국내 학술저·역서는 ISBN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가. 국제학술저·역서: 출판지가 우리나라를 제외한 G20국가이며, 200페이지(목차, 색인 포함) 이상인 초판 저·역서

나. 국내학술저·역서: 국내외 전문 학술저·역서로서 학술저·역서의 일반적인 형식(참고문헌, 각주 등)을 갖춘 200페이지(목차, 색인 포함) 이상인 초판 저·역서

다. 기타학술저·역서: 가와 나에 해당하지 않은 저·역서

다만, 연구소의 연구보고서 형태의 저서나 주요 내용이 과거 논문이면서 다른 저서의 형태로 발표된 저서는 제외

라. 편저/개정판/실습용 교재/사전류 :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저서에 실린 내용을 종합·편집해서 출판한 서적, 내용상의 변화가 분명한 개정판, 전공 및 학술 관련 사전 편찬

## 3. 학술발표

가. 국제: 국제규모 학술대회 발표 전문(full paper) 또는 요약본(abstract). 단, 주제발표자의 소속기관이 3개국 이상이어야 하고, 주관기관이 “학회이거나 학술단체”로 구성되어야 함

나. 국내: 국내규모 학술대회 발표 전문(full paper) 또는 요약본(abstract).

단, 주관기관이 “학회이거나 학술단체” 로 구성되어야 함.

4. 외부 연구비 신청

외부 연구비 신청은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에 의한 외부 연구비 신청의 경우만을 인정한다.

5. 외부 연구비 수혜

연구비 수혜는 중앙관리 연구과제의 경우만 인정하고, 계약된 연구 시작 일을 기준으로 연간 외부 연구비 수혜 총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동연구의 경우는 총 연구비 수혜 금액을 참여 연구원 수로 나누어 이를 연구비 수혜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전남대학교 연구비 및 산업체 연구비는 제외하고, 전남대학교 대응자금이 지원되는 연구비는 대응자금 액수를 제외한다.

6. 학술상

학술상은 전공 분야의 연구 및 학술적 업적을 인정받아 국내·외 학술단체로부터 받은 상을 말한다.

[붙임 5] 산학협력 연구업적평가

구 분		평 가 항 목	점 수	비고
산학협력 교육활동	1. 현장실습 지도	현장실습 지도(과목당)	50	주요지표
	2. 캡스톤디자인 지도	캡스톤디자인 지도(건당)	10	
산학협력 연구활동	3. 특허 기술이전	1억원 이상	500	주요지표
		6천만원~1억원 미만	400	
		3천만원~6천만원 미만	350	
		1천만원~3천만원 미만	300	
		5백만원 ~ 1천만원 미만	100	
	4. 노하우 기술이전	1억원 이상	200	
		6천만원~1억원 미만	160	
		3천만원~6천만원 미만	120	
		1천만원~3천만원 미만	80	
		5백만원 ~ 1천만원 미만	20	
	5. 기술사업화	5억원 이상	200	
		3억원~5억원 미만	160	
		1억원~3억원 미만	120	
		5천만원~1억원 미만	80	
		5천만원 미만	20	
	6. 산학협력 공동연구비 수주	1억원 이상	300	주요지표
		5천만원 ~ 1억원 미만	250	
		1천만원 ~ 5천만원 미만	200	
		5백만원 ~ 1천만원 미만	50	
	7. 특허 등록	해외특허(건당)	500	주요지표
국내특허(건당)		200		
8. 기타 지식재산권 등록	실용신안(건당)	50		
	소프트웨어(프로그램 등록) (건당)	50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건당)	50		
9. 창업	창업(건당)	100		
산학협력 봉사활동	10. 기술·경영지도 (자문)	건당	10	주요지표
	11. 산업체 강의	건당	5	
	12. 산업체 파견	6개월	50	

- ※ “3. 특허 기술이전” 및 “4. 노하우 기술이전” 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발명자의 경우에는 기술료 입금액에 대하여 발명자보상금 지급신청서의 발명자 지분에 따른 해당 금액만 인정하여 계산한다.
- ※ “7. 특허 등록” 및 “8. 기타지식재산권 등록” 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발명자에 따른 인정률은 2인 공동 70%, 3인 공동 60%, 4인 이상 공동은 50%를 인정하여 계산한다.
  -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세부 심사기준은 각 평가단위의 특성에 따라 변경하여 적용하되 산학협력 중심형 평가유형은 산학협력영역을 최소 30%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1. 현장실습 지도

교육내용의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실습 기관 간의 협약체결 등을 통해 현장에서 이뤄지고 학점으로 인정되는 대학 교육과정 학기제(계절학기 포함) 기간 동안 현장실습 지도교수로 참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캡스톤디자인 지도

대학정보공시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에 공동지도교수로 참여한 증빙이 있는 경우 ‘캡스톤디자인지도(건당)’ 실적으로 인정한다.

3. 특허 기술이전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 명의의 특허 기술을 제3자와 기술이전계약(양도, 실시권 허여 등)을 체결하여 발생된 수입으로, 당해연도 입금액 기준의 기술료 수입금에 한하여 인정한다.

※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기술이전의 경우에도 특허 기술이전 실적으로 인정한다.

4. 노하우 기술이전

교원의 직무와 관련된 노하우 기술을 산학협력단을 통해 제3자와 기술이전계약(양도, 실시권 허여 등)을 체결하여 발생된 수입으로, 당해연도 입금액 기준의 기술료 수입금에 한하여 인정한다.

5. 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는 정부로부터 공인된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교원이 발명한 기술(특허)에 대하여 기술가치를 평가받아 법인에 현물 출자된 금액에 한하여 인정한다.

6. 산학협력공동연구비 수주

산학협력공동연구비 수주는 정부대응 투자금액이 아닌 순수 기업체 출연 연구비만을 인정하며, 기업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공동연구의 경우는 총 산학협력공동연구비 수주 금액을 참여 연구원 수로 나누어 이를 산학협력공동연구비 수주 금액으로 인정한다.

7. 특허 등록

산학협력단 명의로 국내 및 해외에 특허권 설정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해외 특허등록의 국가 인정 범위는 G20 회원국(대한민국 제외)으로 제한한다.

※ 식물신품종등록의 경우 국내특허와 동일하게 평가한다.

8. 기타 지식재산권 등록

산학협력단 명의로 산업재산권(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저작인접권 포함)의 설정등록 또는 권리등록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9. 창업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을 교내·외에 설립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10. 기술·경영지도(자문)

기술·경영지도 자문 실적은 연구수행 결과 등을 활용하여 산업체가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 및 현장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해 산업체와의 기술·경영지도 자문 계약을 통하여 기술지도 또는 경영지도 자문료를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1. 산업체 강의

산업체 강의는 교원의 전공분야와 관련된 강의로써 산업체로부터 강의 의뢰를 받고 강의를 지급받은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2. 산업체 파견

민간 산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하는 경우로, 파견 발령 공문 실적만 인정함.

